

제8편 기타

1. 우애회규정

제1조(목적) 본회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직원(교육직원, 사무직원(법인사무처 포함) 및 기능직원)으로서 상호부조와 우애를 목적으로 한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제2조(구성) ① 본회의 회원은 전임교육직원, 사무직원(법인사무처 포함) 및 기능직원으로 조직한다.

② 본 대학교의 전임직원은 자동적으로 본회 회원이 된다.

제3조(지급절차) 본회 회원중 경조사를 당하였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전 회원에 해당하는 회비를 재무과에서 선대하고 회원 봉급에서 공제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본회 경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사 : 가. 본인 결혼

나. 본인 회갑

2. 애사 : 가. 본인 사망

나. 부모, 배우자, 자녀사망(자녀는 만 7세 이상에 한함)

제5조(효력) 본회 회원은 제4조에 해당사항이 발생시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총무과에 제출함으로써 제6조의 적용을 받는다.

제6조(지급액) 본회의 경조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경사 : 가. 본인 결혼 - 매인당 교수 100%, 직원·기능직원 50%

나. 본인 회갑 - 매인당 교수 100%, 직원·기능직원 50%

2. 애사 : 가. 본인 사망 - 매인당 교수 100%, 직원·기능직원 50%

나. 부모, 배우자 사망 - 매인당 교수 100%, 직원·기능직원 50%

(다만, 여자회원은 친부모를 적용함)

다. 자녀 사망(만7세이상)- 매인당 교수 100%, 직원·기능직원50%

제7조(회비증감) 봉급 증감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